

October, 31, 2024

## 2024년 10월 환경 주요 정책 동향 소개

2024년 10월 환경 분야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해 드립니다.

BKL은 2024년 10월부터 매월 환경 분야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하는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는 지난 한 달간의 환경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의 최근 개정 현황, 입법(행정) 예고 등 입법 동향과, 환경부의 최근 정책 동향, 환경부 인사 동향으로 구성됩니다.

### I. 주요 입법 동향

#### 1. 법령, 고시 등 최근 개정 내역

| 공포(시행)일자             | 법령명 (고시 등)                     | 주요 개정 내용                                                                                                                                                                             | 비 고             |
|----------------------|--------------------------------|--------------------------------------------------------------------------------------------------------------------------------------------------------------------------------------|-----------------|
| '24.10.10.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 확인을 위해 등록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작성방법을 정하고, 해당 면제 확인을 최초 1회만 받도록 하며,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개한 유해성 평가 결과를 통하여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을 위하여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의 제출을 생략 | 화학              |
| 9.20.<br>(‘25.3.21). | 폐기물관리법                         |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가 폐기물을 사용하여 시멘트를 제조한 경우에는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폐기물             |
| 10. 4.               | (제공대상 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해당 유해성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제정                                                                                                                                  | 화학<br>(국립환경과학원) |
| 10. 4.               | (등록신청자료의 유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관련된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함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자료 중 유해성과 관련된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                                                                              | 화학<br>(국립환경과학원) |

|        |                                                         |                                                                                                                                                                                          |                 |
|--------|---------------------------------------------------------|------------------------------------------------------------------------------------------------------------------------------------------------------------------------------------------|-----------------|
| 10. 2. |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br>업무처리지침)                                 | 재활용실적 증빙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장 조사체계를 개선하며, 페트병 포장재 재활용실적 인정기준을 확대하고, 폐기물부담금에서 EPR제도로 전환 시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신규품목에 한해 공제 조합 가입기한을 한시적으로 연장                                                            | 폐기물             |
| 9.30.  |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br>관한 고시)                      | 검사기한이 경과하여 검사 수행이 불가한 운반용기에 대해서 일정 기간동안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검사실시 시점 명확화, 용기검사 수행기관 및 시험기준 등 세부절차를 구체화<br><br>(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와 유해화학물질 실외<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도 동일하게 개정) | 화학<br>(화학물질안전원) |
| 9.30.  |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br>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br>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br>한 고시) | 반도체·디스플레이 가스공급설비의 상시 누출이 발생하지 않는 가스공급설비에 대해서는 유·누출 발생 시 배출설비가 처리설비로 자동 연결되어 정상 가동되며, 정상 작동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상시 처리로 인정                                                              | 화학<br>(화학물질안전원) |
| 9.25.  |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br>사후관리 운영 지침)                             |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검사기관의 시험검사 부적합, 자료제출 등 거부시 처분조항을 신설                                                                                                                 | 기타<br>(국립환경과학원) |
| 9. 6.  | (분리배출<br>표시에 관한 지침)                                     | 무라벨 또는 병마개 부착 라벨 사용 소포장 제품에 대한 분리배출 표시 방법을 먹는샘물에서 음료류까지 확대                                                                                                                               | 폐기물             |

## 2. 환경부 입법(행정) 예고

| 예고기간                   | 법령명 (행정명)   | 주 요 내 용                                                                                                                            | 비 고 |
|------------------------|-------------|------------------------------------------------------------------------------------------------------------------------------------|-----|
| '24. 9.26. ~<br>11. 6.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폐유독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비된 유독물질 범주를 적용하고, 재활용시설에 선별시설을 추가하며, 폐기물처리업의 최초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기산일을 정비하고, 의료폐기물 종류에 인체분비물 추가 및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기준을 합리화 | 폐기물 |
| 9.26. ~<br>11. 6.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반입협력금 대상 폐기물, 금액의 범위 및 사용 용도를 정하고, 지정폐기물 관리를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                                                                      | 폐기물 |

|                   |                                   |                                                                                                                                                                                            |     |
|-------------------|-----------------------------------|--------------------------------------------------------------------------------------------------------------------------------------------------------------------------------------------|-----|
|                   |                                   | 방하며, 폐목재류 세부분류에 폐가구류를 별도 분리하고, 폐가구류에 대한 재활용 가능 유형을 추가하며,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예외적 매립시설의 최종복토 기준을 합리화 하는 등 제도 개선                                                                         |     |
| 9.26. ~<br>11. 5. |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시행령       | 건설현장 작업시간 중에는 덮개 개방을 허용하되, 대상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발생 억제 조치를 한 경우로 한정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동일한 위반내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중복되므로 일부 문구를 삭제                                              | 폐기물 |
| 9.25. ~<br>11. 4.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시행령       | 재활용 기술 및 시장 발전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안전한 처분(폐기물부담금)에서 재활용(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으로 정책을 전환하여 제품을 추가                                                                                                 | 폐기물 |
| 9.25. ~<br>11. 4.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br>시행령 | 유해물질 사용제한 및 회수·인계·재활용 의무 대상을 전기·전자제품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부과금 납부 시 재활용·회수 의무이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을 면제하며,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자진신고 시 최초가 아니더라도 과태료를 경감                                      | 폐기물 |
| 9.20. ~<br>9.30.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물순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고 통합적인 대책 시행을 위해 건전한 물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                                                                                                       | 수질  |
| 9.13. ~<br>10.25.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2차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기간('25~'29)에 대기총량 제도의 운영을 위한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를 설정                                                                                                                              | 대기  |
| 9. 4. ~<br>10.14.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br>시행령   | 자발적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의 세부 기준, 배출권 추가 할당 및 할당취소의 세부 사유,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및 등록취소, 준수사항 등에 관한 세부기준,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설립허가 절차,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고, 감축노력 없는 배출량 감소로 인해 기업의 횡재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출권 할당의 취소 기준 등을 강화 | 대기  |
| 9. 2. ~<br>10.14.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공공폐수처리시설로의 오·폐수 유입승인, 배수설비 설치 승인 등 규정을 마련하고, 오·폐수 유입승인, 배수설비 설치 승인 등 의무사항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며, 세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 완                                                               | 수질  |

|                   |                         |                                                                                                      |     |
|-------------------|-------------------------|------------------------------------------------------------------------------------------------------|-----|
|                   |                         | 충저류시설 기술진단 결과 등의 접수와 과태료 부과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 및 기술진단 미이행 시 세부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                         |     |
| 9.25. ~<br>10.11. | (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 규정)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대상 및 조건과 감축사업 추진 및 관리 등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위탁·전담기관의 총괄적 사업 운영체계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에 대한 지침을 제정 | 대기  |
| 9. 5. ~<br>9.25.  |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재활용실적 증빙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장 조사체계를 개선하며, 페트병 포장재 재활용실적 인정기준을 확대하고, 신규 EPR 품목의 공제조합 가입기간을 연장                | 폐기물 |

### 3. 환경 관련 의원 주요 입법 발의

| 발의일자<br>(발의자)            | 법령명                        | 주 요 내 용                                                                                                                                                | 진 행                  |
|--------------------------|----------------------------|--------------------------------------------------------------------------------------------------------------------------------------------------------|----------------------|
| 10.15.<br>(김위상 의원 등 10명)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                                                                                           | 위원회<br>회부<br>(10.16) |
| 10.11.<br>(강득구 의원 등 10명)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환경부장관이 대체 자동차의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제한의 예외를 규정할 수 있게 하고, 대체 자동차 보급을 위해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                                                                      | 위원회<br>회부<br>(10.14) |
| 10. 8.<br>(임이자 의원 등 10명)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자로 하여금 배터리 생산 시 재활용 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                                                                                            | 위원회<br>회부<br>(10.10) |
| 10. 4.<br>(주호영 의원 등 12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 및 상황을 고려하여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지정 등 제도 시행 여부를 조례를 통하여 정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1회용품 사용 억제, 다회용기 사용 확대 및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 | 위원회<br>회부<br>(10. 7) |
| 9.30.<br>(김소희 의원 등 10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부분과 “환경부장관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 위원회<br>회부<br>(10. 2) |

|                         |                           |                                                                                                                                                                                                  |                     |
|-------------------------|---------------------------|--------------------------------------------------------------------------------------------------------------------------------------------------------------------------------------------------|---------------------|
|                         |                           |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 부분을 별도의 호로 각각 나누어 규정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에 따른 확인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표시 및 확인기간을 3년(2회 이상 표시하는 경우 5년)으로 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하는 자가 환경부장관에게 확인받은 비율을 적정 표시하는지의 여부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고 및 검사 대상에 추가 |                     |
| 9.25.<br>(김소희 의원 등 16명)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폭염과 폭우 등 기후 위기로 인한 농축수산업 수급, 가격 불안정, 재해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그에 대한 재원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축산법」에 따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설                                               | 위원회<br>회부<br>(9.26) |
| 9.23.<br>(김소희 의원 등 14명) | 정부조직법                     |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의 사무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명시하며, 기후환경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조정                                                                                                      | 행안위<br>회부<br>(9.24) |
| 9.12.<br>(조지연 의원 등 11명) | 폐기물관리법                    | 사용 종료 매립장에 대해 안전성 검토를 통과할 경우 종료 매립장 위에 주차시설, 야적시설, 물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 위원회<br>회부<br>(9.13) |
| 9.12.<br>(조지연 의원 등 13명)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법 시행 전부터 소유와 상관없이 기존에 운행해온 경유자동차는 계속 운행이 가능하도록 사용 제한 적용을 배제하고,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경유자동차 외 대체자동차가 출시되지 않는 경우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예외규정을 마련하며, 제작사에 경유자동차 외 대체자동차가 없는 경우 대체자동차 제작 협조 규정을 추가                         | 위원회<br>회부<br>(9.13) |
| 9.11.<br>(이용우 의원 등 11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사업이나 발전용 화석연료의 채굴·수입·가공·판매의 사업을 하는 기업 및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및 사업장은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제도를 정비                                                                           | 위원회<br>회부<br>(9.12) |
| 9. 6.<br>(박홍배 의원 등 12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품 및 용기의 제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규정하여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촉진                                                                                                                                 | 위원회<br>회부 (9. 9)    |
| 9. 4.<br>(이수진 의원 등      |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      | 플라스틱이 생활용품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그 생산량·사용량이 증가하면서, 건강에 대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하                                                                                                                                       | 위원회<br>회부 (9.       |

|      |    |                                                                                |    |
|------|----|--------------------------------------------------------------------------------|----|
| 12명) | 별법 | 고 있어,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정의와 실태조사의 실시, 사용·배출의 규제, 저감·제거기술의 촉진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 | 5) |
|------|----|--------------------------------------------------------------------------------|----|

## II. 환경부 최근 정책 추진 동향

### 1. 2025년도 환경부 정부 예산(안) 주요 내용

#### 1) 2025년도 환경부 예산(안)

##### (1) 환경부 소관 : 14조 8,262억원 (전년 대비 3.2%증가)

- 예산 : 13조 94억원 (전년 대비 4% 증가)
- 기금 : 1조 8,168억원 (전년 대비 1.4% 감소)

#### 2) 2025년 주요 예산 사업 설명

##### (1) 기후위기시대 국민안전 물관리 강화 (6조 4,145억원)

- 국가하천정비 등 홍수대응 투자 강화
  - 홍수에 취약한 국가 승격하천(16개 지구) 본격 정비, 배수영향 구간 정비 전면 확대(40개소), 대규모 하천사업(4개소) 중점 정비
  - 인력 중심에서 AI 분석 자동화 유량 조사 전환(176개소)
  - 댐 시설 안전성 강화, 치수능력 확대 및 소규모댐 건설 등
- 상수도 정비 등 안전한 물공급 추진
  - 노후 상수도 정비(50개소), 수돗물 유출 차단 장치(65개 정수장) 등
  - 광역상수도 확충(667억원), 공업용수도 확충(290억원), 지하수 저류댐(신규 5개소) 등 대체 수자원 제공
- 폐수 및 생활하수 관리 집중 투자
  - 산업폐수 및 수질오염사고 예방 중점 투자 (2,819억원)
  - 스마트 하수관리 및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등 수질오염 예방 (2,485억원)

##### (2) 탄소중립 달성(4조 7,198억원) 및 녹색산업 육성 (1조 27억원)

- 2030 NDC 이행 및 녹색전환 촉진
  - 녹색전환 보증 신설(1,400억원), 녹색산업 해외진출 지원 펀드 확대(600억

- 원), 녹색 신산업 재정 융자(3,333억원) 및 이차보전(6.8조원) 등
    - 중소기업 신산업 지원(50개사, 125억원), 폐배터리 순환 이용(102억원)
  - 충전인프라 안정성 제고 및 지원 확대
    - 스마트제어 완속 신규 설치(7.1만기), 노후 일반형 스마트제어 완속 교체 (2만기), 급속충전기 신규 설치(4,400기)
    - 무공해차 2030년 450만대 보급 맞추어 35.2만대 확대 (3조 1,915억원)
  - 기업, 지자체 탄소중립 전환 지원 (833억원)
    - 국제 탄소규제 지원 강화, 그린 ODA 확대, 탄소중립 특화모델 구축
- (3) 대국민 환경서비스 제고 및 건강한 환경 구현 (2,480억원)**
- 취약계층 보건의용권 도입(1만명), 훼손지 복원 및 체계적 폐기물 관리

## 2. 2024년 환경부 국정감사(1차) 주요 내용

### 1) 환경부 1차 국감

- (1) 일시(장소) : '24.10. 8(화) 10:00~22:30 (국회)
- (2) 참석위원 : 안호영 위원장 등 16명 전원

### 2) 여당 주요 질의 내용

- (1) 2030 NDC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 및 화재 저감 대책
- (2) 국가미세먼지 대책에 응축성 미세먼지를 추가 확대
- (3) 국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환경부를 부총리급 기후환경부로 개편
- (4) 일회용품 회수보다 사용량 자체 줄이는 방향 검토
- (5)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준수 확인 및 사후관리 강화
- (6) 맑은물 하이웨이, 재활용 분리 대책, 지하철 소음 대책, 2차전지 폐수 기준, 화학 물질관리협회 기강 해이, 상하수도 노후화 등

### 3) 야당 주요 질의 내용

- (1)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반영 않은 토목사업 기후위기담 줄속 추진
- (2) 배출권거래제 90% 무상할당으로 탄소중립 후퇴, 유상할당 확대 필요
- (3) 4대강 녹조 심각 및 공기 중 녹조 독소 비강 검출 합동 조사

- (4) 화력발전소와 시멘트 제조사 대기 자가측정의 허위 측정
- (5) 2030 NDC 산림흡수량 수정, 또는 2035 NDC에 반영 필요
- (6)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반복 발생에 따른 조치 강구
- (7)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의 음폐수 올바로시스템 신고 은폐 의혹
- (8)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포기 및 내부 문건 작성 경위 조사
- (9)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 영향평가 진행
- (10)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암모니아 배출허용 기준 과다로 조정
- (11) 온실가스 수송부분 배출량, 유해화학물질 서류 점검 71%, 사육곰 관리, CITES, 지하철 미세먼지, 제주 2공항 환경영향평가, EPR 등

#### 4) 환경부 주요 답변 내용

- (1)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강화 및 책임보험 가입 등 조치
- (2) 공기 중 녹조 독소 미발견 및 민간 공동조사 실시 검토
- (3) 홍수예방 등 필요한 곳에 기후위기댐 선정
- (4) 발전소와 시멘트사 대기 자가측정에 대한 전수조사 적극 검토
- (5)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조항 검토 및 환경오염 예방 조치 강화
- (6) 전주 리사이클링타운 보완책 마련 및 전수 점검계획 수립
- (7)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모니터링 3만6천건 실시 및 추가 방안 노력
- (8) 가축분뇨 제조시설 암모니아 기준 기간 유예 및 설치비 지원 검토 등

### III. 환경부 인사 동향

| 발령일자   | 대상자       | 前 근무지               | 現 근무지               |
|--------|-----------|---------------------|---------------------|
| 10. 1. | 고위공무원 홍정섭 | 물관리위원회지원단장          | 환경부                 |
| 9.27.  | 고위공무원 황계영 | 환경보건국장              | 중앙분쟁조정위원회<br>위원장    |
|        | 고위공무원 박연재 | 영산강유역환경청장           | 환경보건국장              |
|        | 고위공무원 김영우 | -                   | 영산강유역환경청장           |
|        | 부이사관 서영태  | 녹환경정책관실<br>녹색전환정책과장 | 일반직고위공무원<br>녹색전환정책관 |

### 관련 구성원

#### 오정민

변호사

T 02.3404.6529

E [jeongmin.oh@bkl.co.kr](mailto:jeongmin.oh@bkl.co.kr)

#### 방종식

외국변호사 (New York)

T 02.3404.7588

E [jongsik.bang@bkl.co.kr](mailto:jongsik.bang@bkl.co.kr)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뉴스레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